2022-재정사업실-204

산업재해예방 보조금 지급사업

보조금 부정수급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

부정수급이란?

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**중대한 범죄**로서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반환, 추가징수, 참여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
부정 수급 주요 사례

사례 1 자부담금 대납(페이백)

공급업체와 결탁하여 보조금 외의 **자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**

사례 2 거짓·부정한 행위

선 투자방식으로 **이미 구입한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**으로 지원신청하는 경우

사례 3 추가물품, 공사 등 무상제공

지원품목 이외 **물품이나 공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**하는 경우

사례 4 허위계산서 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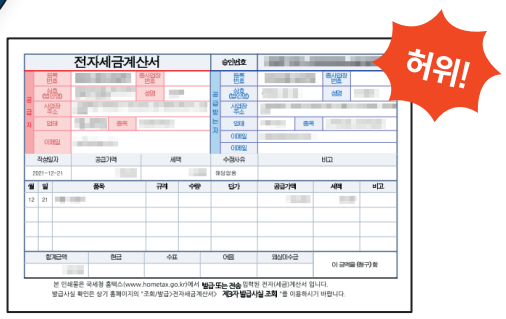

실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**허위계산서 발행**하여 그 차액을 편취

페이백(자부담금 대납) 권유 및 목격, 실제보다 높은(부적정금액) 가격으로 유통 등 **부정수급 행위 확인 시** 공단 클린사업장조성사업 홈페이지(https://clean.kosha.or.kr) **부정당행위 신고게시판** 또는 **1544-3088**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-재정사업실-204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조금 부정수급 하면 반드시 적발됩니다

안전보건공단 부정수급 예방활동

- 전광판, 클린사업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활동 홍보
- 공급업체와 지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점검 실시
- 부정수급 관련 신고 및 제보를 할 수 있는 부정당행위 신고게시판 운영
-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하여 참여제한 및 수사의뢰 등 조치

최근 부정수급 적발 사례

- 공급업체가 지급사업장의 자부담금을 차명계좌로 입금(페이백)
- 사업주가 교체설비의 출고일자를 속이기 위해 명판을 바꾸어 신청
- 지원설비의 불필요한 영상자료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페이백

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및 보조금 지급제한 조치

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,
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(보조·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) 및
같은 법 시행규칙 제237조(보조·지원의 환수와 제한)

처분조치 **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징수** 및 **최대 5년**간 지급제한

위반 사항	처분 조치
제1호 거짓, 부정	추가징수 5배, 지급제한 5년
제2호 폐업	추가징수 없음, 지급제한 3년
제3호 임의매각·훼손·분실	추가징수 2배, 지급제한 3년
제4호 목적 외 사용	추가징수 2배, 지급제한 3년
제5호 설비 국외 이전	추가징수 2배, 지급제한 3년
제6호 중대재해발생	추가징수 없음, 지급제한 3년
제3~5호 경미한 부주의(신설)	추가 환수금액의 1/2 이내
제3~5호 위반 후 5년 이내 같은 사유 위반	추가징수 5배
제2~6호 위반 후 2년 이내 제2~6호 재위반	지급제한 5년

2022-재정사업실-204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